

[別表]

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

區 分	許 容 行 爲
1. 自然保存地區 (海中公園地區를 포함한다)	1. 學術研究 또는 自然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行爲 2. 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3. 軍事施設·通信施設·航路標識施設등으로서 이 地域이 아니고는 設置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最小限의 施設의 設置
2. 自然環境地區 (海上公園地區를 포함한다)	1. 自然保存地區에서의 許容行爲 2. 地目 (現況地目を 말한다) 을 變更하지 아니하는 1次 産業行爲, 草地造成行爲 3. 密集하지 아니하는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4. 造林·育林·伐採 기타 國防上·國民經濟上·公益上 필요한 最小限의 行爲 또는 施設의 設置
3. 農漁村地區	1. 自然保存地區와 自然環境地區에서의 許容行爲 2. 農漁家の 建築·農漁家に 필요한 施設의 設置 및 農漁民의 生活環境造成行爲 3. 農漁村自體機能上 필요한 諸般施設의 設置 및 行爲 4. 公害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家內工業
4. 集團施設地區	探訪休養地에 適合한 公園施設의 設置行爲